

학생회 회칙 제 1관 총 강

제 1조 (지위) 중국학과 학생회는 중국학과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활동 기구이다.

제 2조 (동전) 중국학과 학생회는 다음 각 조에 명시한 내용의 성공적인 업무수행 및 행사를 위해서 어느 행사보다도 우선하여야 하며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.

제 2관 중국학과 학생회

제 3조(지위) ① 중국학과 학생회는 중국학과 전 학년을 대표하는 학생회이다.

② 중국학과 학생회는 학회장 부재시 부학회장이 모든 업무를 대신한다

③ 중국학과 학생회는 중국학과에 재학생 모든 학생들이 투표로 결정한다.

제 4조(구성) 중국학과 학생회는 전 학년중 학회장 및 부학회장이 임원을 구성한다.

제 3관 학회장

제 5조 (지위와 책무) ① 학회장은 중국학과 전 학년 학생을 대표한다.

② 학회장은 회의 목적을 명심하고 중국학과 학생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학생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업무 집행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회칙 준수하며 학생회의 주체성과 수호할 책무를 진다.

제 6조 (학회장의 선거 · 피선거권) ① 학생회장은 중국학과 학생들의 보통 · 평등 · 직접 ·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.

② 학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중국학과 재학중인 자
2. 직전 학기 평점이 2.5 이상인 자
3. 다음학기 등록이 확실한 자
4.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

③ 입후보 등록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'선관위' 라 칭한다)에서 공고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 공고는 3日 이상을 하여야 한다.

1-2 (구성) 선관위 구성위원은 중국학과 학생회 학회장 및 부학회장, 부장급이상으로 정한다.

2. 입후보 등록시에는 재학증명서 1부,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출한 2호의 내용이 학생회의 회칙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가도 인정되면 선관위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제출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도 같다. 그러나 입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는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.

⑤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1.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선거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.
2. 입후보자가 1인 일 때에는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학회장으로 당선된다.
3. 선거권자란 투표일 현재 중국학과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.

제 8조 (학회장선거의 시기) ① 학회장 및 부학회장, 선관위가 정한다.

② 학회장이 부재중일 때 부학회장이 학회장 업무를 총괄하여 선거한다. 선거방법은 전 항과 동일하다.

제 9조 (학회장의 임기) 학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, 임기는 다음 학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다.

제 10조(학회장의 권한 대행) 학회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학회장 및 중국학과 학생회 임원들이 정한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제 4관 집행부

제32조(지위) 집행부는 중국학과 학생회의 집행 기구이다.

제 11조 (집행부의 구성) ①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 학회장 및 부학회장이 임명한다. 그러나 각 학년 과 대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집행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총무부 : 부장 1인 - 차장 1인
2. 기획부 : 부장 1인 - 차장 1인
3. 체육부 : 부장 1인 - 차장 1인
4. 여성부 : 부장 1인 - 차장 1인
5. 홍보부 : 부장 1인 - 차장 1인
6. 각 학년 과대표

③ 집행부의 구성은 제 2항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학회장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2개 이하의 부서를 추가 할 수 있으며, 하나의 부서를 2개 이상으로 나눌 때도 같다.

제 12조 (각 부의 업무) 집행부원은 학생회 활동에 관하여 학회장을 보좌하며, 회정에 관하여 심의 · 결정한다.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총무부 : 예산편성 · 각 총회의 개최 · 및 집행부의 보고를 담당한다.
2. 기획부 : 행사 및 운영의 기획 · 조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.
3. 체육부 :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과 축구 동아리 지원을 담당한다.
4. 여성부 : 여학생 학교활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
5. 홍보부 : 본 회의 모든 홍보활동을 담당한다.
6. 각 학년 과 대표 : 각 학년을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각 학년에 학생회 활동상황을 보고한다.

제 13조

각 집행부는 업무결과는 학회장 및 부학회장 총무부에 보고한다.

제 14조 (재물관리) 집행부는 모든 재물을 관리할 책무을 진다.

제 15조 중국학과의 단합을 위해 학사 일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하여 행사를 추진할수 있다.

제 5관 임원회의

제 16조 (권한 · 구성) ①임원회의는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

②임원회의는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.

③학회장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학회장이 부의장이 된다.

제 17조(심의사항) 다음 사항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

- *. 학생회 활동의 기본 계획과 집행부의 일반 정책
- *. 대외적으로 중국학과를 대표하는 정책
- *. 회칙 개정안 · 전체학생투표안
- *. 예비안 · 결비 · 학생회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
- *. 집행부에서 요구한 활동비
- *. 집행부에서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
- *. 집행부원간의 권한의 획정
- *. 학생회 활동상황의 평가 · 분석
- *. 집행부 각 부의 중요한 정책과 조정
- *. 집행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집행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회원 요구사항의 심의
- *. 세미나실 기타 컴퓨터실 운영
- *. 기타 학회장 · 집행부임원이 제출한 사항

제 5관 학생회비

제 18조 (목적) 년간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.

제 19조(시기) ① 학생회비는 대학생활 총 4년동안 신입생때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.

② 전과 및 편입생은 직전과의 납부여부에 따라 면제 할 수 있다.

③ 위 ① 항을 위반한자에 한해서는 명년에라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20조(감사) ① 학생회비는 학생회 자치기구 예산으로써 학생회 학회장 및 부학회장과 총무부가 관리하며 학생회는 학생회비의 사용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.

② 학생회비는 중국학과 학생회 총무부장이 감사위원이 된다.

* 학생회비 문제가 발생시 학생회 총감사기구인 학생총대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다.

*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